

도•소매업

사고사망사례집













도・소매업

사고사망 사례집



💠 목차

	도·소매업 사고 사망재해 개요 ·······1
	도·소매업 사고 사망재해 사례 ······ 9
0	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
0	에어컨 설치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추락
0	대형마트 실내의 시설 점검구에서 추락
0	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적재작업 중 추락
0	창고지붕 위에서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추락
0	집게차 적재함에서 인터넷 선 제거 중 추락
0	케이블TV 보수작업후 철수 중 외벽에서 추락
0	에어컨 실외기 분리작업 중 발코니에서 추락
0	스티로폼 분쇄기 점검작업 중 칼날에 끼임
0	파쇄기 내부청소 중 칼날에 협착
0	작동중인 주유소 세차기의 외벽에 끼임
0	옥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
0	철제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
0	밤 포대 보관용 철재 팔레트 붕괴
0	창고 모서리를 보행 중 운행중인 지게차에 치임
0	철판이 굴착기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가격
	설비별 재해예방 O.P.L 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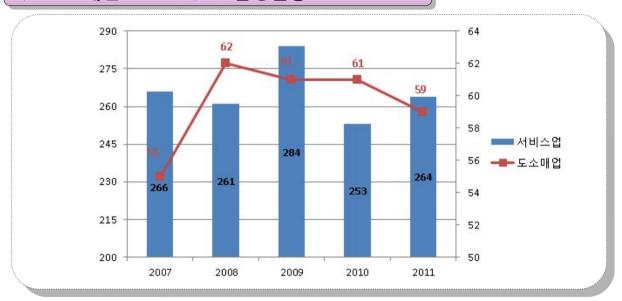
도·소매업 사고 사망재해 개요

최근 3년간 서비스업 사고 사망자는 801명

도 · 소매업에서 사업장 안전조치 미흡과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181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.

도·소매업의 사고 시망재해 주요 기인물은 🕕 각종 차량 33.1% 🛭 이류차 10.5% 3 계단 2.8% 4 지게차 2.8% 5 일반 작업용 리프트 2.8%

◈ 도·소매업 사고사망자 발생현황



◈ 발생형태

◎ 교통사고 43%, 추락 17%, 넘어짐 8% 순으로 발생





◈ 작업별 주요 사망재해내용

작업 구분	주요 재해내용
차량 운행	• 도로교통사고
이륜차 배달업무 등	· 중앙선 넘어 추월 또는 좌회전 중 충돌 · 앞 차량을 추돌하거나 후방차량에 추돌 당함 · 갑작스런 차로 변경, 반대편 유터 차량과 충돌 · 빗길 미끄러지거나 굽은 도로 조작 미숙
※ 물품배달(7), 치킨・피자배달	달(3), 신문배달(3), 우유배달(2), 자동차부품배달(2), 출장(2)
화물차량 적재함에서의 적재·하역작업	•철재류 묶을 때 적재불량•끈 끊어져 붕괴 •적재함에서 작업 또는 내려오던 중 추락 •호이스트 사용 중 화물 낙하
적재물 관리	· 층층이 쌓은 적재물 일부가 접촉에 의해 붕괴·낙하 · 중량물 적재대 또는 적재대의 적재물 붕괴 · 세워둔 철판이 접촉에 에의 넘어져 압사
지게차 작업	· 중량물을 운반 또는 경사로 이동중 지게차 넘어짐 · 지게차와 화물차량/건축물 사이에 끼임 · 하부 점검 중 지게차 출발로 바퀴에 깔림
이동식 사다리 작업	·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거나 사다리가 넘어짐 (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던가 천정 보수, 에어콘 설치 등 의 작업 등)
계단 통행 또는 청소작업	•사업장 내 계단에서 물건 운반중 실족 •건물계단 청소작업 중 실족 •숙소계단 또는 노래방 계단에서 실족
거래처의 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	• 와이어로프 파단 또는 후크 이탈로 운반구 추락 • 타인의 조작에 의한 불시 기동으로 운반구에 끼임 • 운반구 탑승하여 이동 중 추락
높은 장소에서의 작업	· 지붕 보수작업중 슬레트·썬라이트 밟아 깨지면서 추락 · 캐노피 돌출천장 설치작업 중 추락 · 높게 쌓은 적재물 위에서 실족
기타 작업	• (폐플라스틱 • 폐스틸로폼) 분쇄기에 말림, 적재물 낙하, 배달시 현장 피트에 빠짐, 냉각탑 수조에 빠짐, 결빙바닥 에서 미끄러짐, 구내에서 후진차량에 치임 등

사고 사망재해 이렇게 예방합니다!!!



- 유해·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설치 또는 부착
- 적재물, 차량 상부작업 금지
- ◉ 보행통로(75럭스), 보통 작업장소(150럭스)에 적정 조도확보

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

- ◉ 벨트, 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
- 사용설비, 차량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·보수 실시
- ◉ 사다리는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2인 1조 작업 지시
- ◉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선정, 지급 및 착용여부 수시관리
- ◉ 사고사례,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

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

- ◉ 보호구의 성능유지, 관리 및 해당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
- ◉ 방호조치 해제금지 및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고
- ◉ 작업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, 작업복장의 점검
- ◉ 기계, 설비류 및 작업의 안전수칙, 교통법규 준수
- ◎ 경고표지 내용숙지 및 이행
-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사항 준수



도·소매업에 적용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별

🚺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(제10조)

- ① 산업재해(사망자,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)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
-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는 그 발생 개요, 워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※ 미이행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▶ 시행규칙 제4조의 2[산업재해 기록 등]

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3.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
- 2.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
- 4. 재해재발 방지계획

🔼 법령 요지의 게시 등 (제11조)

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.

※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안전·보건 표지 부착 등 (제12조)

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,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,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·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※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▶안전조치 (제23조)

사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
- 2.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
- 3. 전기,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
- ※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.000만원 이하의 벌금

🚮 보건조치 (제24조)

사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흄, 미스트, 산소결핍,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
- 2. 방사선, 유해광선, 고온, 저온, 초음파, 소음, 진동,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
- 3.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,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
- 4. 계측감시, 컴퓨터 단말기조작, 정밀공자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
- 5. 단순박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
- 6. 환기, 채광, 조명, 보온, 방습,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
- ※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금로자의 준수사항 (제25조)

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※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(제41조)

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·수입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 려면 "물질안전보건자료"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다.

※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전강진단 (제43조)

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.

- ※ 미이행 시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▶ 시행규칙 제99조[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]

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무실에서 서무, 인사, 경리, 판매,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, 그 밖의 근로 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,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질병자의 근로금지·제한 (제45조)

전염병,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

※ 미이행 시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



7 8	구 분 점 검 항 목		점검결과			
一 元			불량	조치		
넘어짐	통로는 정리정돈되어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?					
재해예방	물청소, 왁스작업 시 '미끄럼 주의'표지를 설치하는가?					
끼임재해 예방	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버튼이 있는가?					
추락	안전한 작업대 혹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는가?					
재해예방	사다리는 미끄럼방지조치 및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는가?					
충돌재해 예방	화물은 적량을 적재하여 시야를 확보하였는가?					
근골격계질환 예방	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대차를 사용하였는가?					
화재예방	현장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설치표시는 되어 있는가?					
	작업반장의 지휘 하에 작업하는가?					
공통 점검사항	안전화, 안전장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가?					
	작업 전, 후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했는가?					
	작업 전, 후 주변을 정리정돈하였는가?					
	지게차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운행하는가?					
	지게차를 용도 이외로 사용하지는 않는가?					
	지게차 안전벨트를 설치하였는가? 후진 시 경보음이 울리는가?					
	재해발생 우려장소에 주의 · 경고표지를 게시하는가?					



도·소매업 사고 사망재해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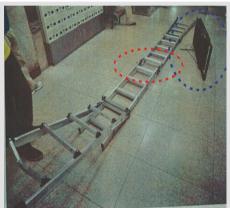
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1년 9월 서울시 소재의 oo사업장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2층 창문 아래턱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, 작업 중 사다리 수직기둥 양쪽이 부러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. 후송 치료 중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불안전하게 작업 실시

-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 목적의 사다리(A형)을 이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
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작업발판이 있는 안전한 작업대 사용

- 높이 2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높이로써 안전난간이 있는 비계를 설치·사용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함

○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

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. 안전대(벨트)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

에어컨 설치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2. 6월 경기도 소재의 ㅇㅇ횟집 내부공사 현장의 에어컨 신규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A형 사다리(1.5m) 위에서 손을 들어 천장(높이 3.4m) 내부의 에어컨 냉매 연결배관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밟고 있는 사다리가 전복되면서 뒤로 추락하여 머리가 작업장 바닥에 부딪혀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불안전하게 작업 실시

-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 목적의 사다리(A형)을 이용하여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
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작업발판이 있는 안전한 작업대 사용

- 높이 2m 이상의 높은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높이로써 안전난간이 있는 비계를 설치·사용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함

○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

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. 안전대(벨트)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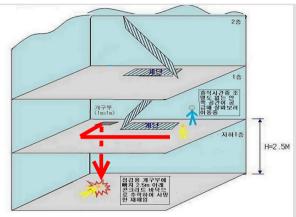
대형마트 실내의 시설 점검구에서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1년 10월 경북 소재의 △△대형마트에서 저녁식사 후 동료근로자와 함 께 휴식을 취하던 판매사원이 계단실 안쪽이 궁금하여 이동 중 점검구(개구 부)에 빠져 약 2.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후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추락위험이 있는 점검구(개구부) 덮개 제거 방치
 - 작업 후 개구부 덮개를 열어 놓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근로자의 출입으로 인해 추락재해 발생
-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주변시야 확보 불충분
 - 대형매장의 밝은 곳에 있다 갑작스레 어두운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주 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족함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점검작업시 출입금지 및 평시에는 점검구(개구부)를 덮은 상태 유지
 - 점검 등의 작업시 방책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표지를 하여 타 근로자의 근접을 예방
 - 근원적인 안전을 위해 작업 후인 평시에는 덮개를 덮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.
- 위험장소에 조명확보 또는 접근 금지조치 실시
 - 위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충분한 시야확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하 거나 아예 접근 금지조치를 하여야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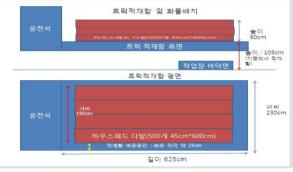
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적재작업 중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1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도·소매업체인 ㅇㅇㅇ철강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혼자서 2.8톤 크레인을 이용 중량물(하우스패드)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적재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치료 중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- ▶사고 당일 완제품 10다발을 화물차량에 3단 높이로 적재하여 화물적재함 측면의 여유 공간은 좌우 25cm이하로 협소
- ▶작업자가 적재된 완제품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





<하우스패드 모습>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개인보호구 미착용
 - 협소한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실시
- O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지 않음

>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화물차 적재함 상부작업시 작업공간 확보
 - 적재함 상부 작업시 작업발판 보강 또는 측면덮개를 적재함과 수평으로 고정하여 측면 여유공간 확보 등의 안전조치 필요
- 개인보호구 착용
 -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후 실시
- 작업지휘자 배치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 무게 100kg이상 화물 적재시 작업지휘 자를 배치하여 작업순서·방법, 기구·공구 점검,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 등 실시

창고지붕 위에서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2.5월 경기도 소재의 도·소매업체에서 근로자가 건축물 내·외장재 보관 창고 경사 지붕에 올라가서. 그늘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 지면서 채광창(Sun light)을 밟고 약 5.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재해발생 원인

-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높이 5.4미터. 지붕 경사각 27°로써 미끄러질 위험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다음의 안전조치 미실시
 - 안전모 및 안전대(안전벨트)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
 - 플라스틱 재질의 썬라이트를 밟을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교육 미실시
 -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을 준수하지 않았고. 이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

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

-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(벨트)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-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 하고.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실시

○ 지붕 위에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 실시

-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폭 30cm 이상의 판자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(작업발판은 주변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함)

○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

-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 실시

집게차 적재함에서 인터넷 선 제거 중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1년 1월 충남 소재의 ○○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 후 후진으로 나오다가 5톤 일체형 집게차(너클크레인)의 붐대에 인터넷 선이 걸리자 운전자가 적재함에 올라가 발을 이용 인터넷 선 제거를 시도하다가 3.5M 높이에서 도로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

› 재해관련 상황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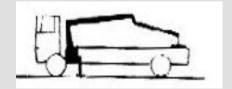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운행 시 너클크레인 붐대(BOOM) 각도 유지상태 부적절
- 크레인 붐대에 걸린 인터넷 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리한 동작(발길질) 시도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차량 이동시 너클크레인 붐대를 낮게 유지
 - 차량 이동시에는 너클크레인 붐대를 최저높이(수평)로 위치시켜 운행
-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
 -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.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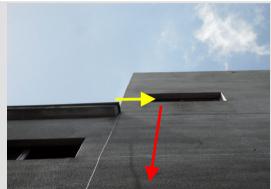
케이블TV 보수작업후 철수 중 <mark>외벽</mark>에서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2. 4월 대전시 소재의 다세대주택에서 케이블TV 유지 보수기사인 근 로자가 옥상에 있는 케이블을 보수한 후 철수하기 위해 옥상에서 외벽을 통해 계단실 창문으로 넘어오던 중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통로가 아닌 불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

- 옥상에서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면서 발 디딜수 있는 발판도 없고 손잡을 곳도 없는 외벽을 통로로 삼아 이동하던 중 추락함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안전한 통로 또는 높은 장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이동

-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열쇠를 가진 거주자가 도착한 후 열쇠로 문을 열고 출입 실시하거나.
- 높은 장소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(차량)을 사용하여 옥상 출입하여야 함

에어컨 실외기 분리작업 중 발코니에서 추락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2년 4월 부산시 소재의 ㅇㅇ아파트 안방 발코니에서 근로자 두명이 발코니 외부 난간에 부착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실외기를 들어 올리다가 난간과 함께 10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안전난간의 노후화 및 작업전 확인 미실시
 - 안전난간이 노후화 되었고. 설치상태에 대한 확인을 작업 전에 미실시
-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개인 보호구 미착용
 - 추락위험이 있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안전난간 위에서 지탱하여 작업하는 작업 관련으로 사전에 작업발판 등의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
 - 또한, 추락위험에 대비한 안전대(벨트),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에서 작업 실시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작업전 안전상태 철저 확인
 - 작업전 근로자는 안전난간을 맹신하지 말고, 설치상태 및 최대 하중을 견 딜수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
-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또는 개인보호구 착용
 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.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또한.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 •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



스티로폼 분쇄기 점검작업 중 칼날에 끼임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1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○○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○○○가 폐스티로폼 분쇄작업을 위해 분쇄기를 동작하였으나. 동작이 되지 않자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투입구 상부에 올라가 분쇄날을 점검 중 미끄러져 분쇄날에 다리가 끼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작업을 수행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기계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점검·정비·수리·청소 등의 작업 실시
 - 기계 등의 점검·수리 등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조작 하지 못하도록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 설치 및 "점검 중" 표지판 부착
 - ※ 조작반 내 주전원 스위치는 가능한 Key type으로 설치







○ 비상정지장치 설치

-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설비운전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장치 설치

파쇄기 내부청소 중 칼날에 끼임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1, 4월 제주시 소재의 ○○자원 작업장에서 자동차 폐범퍼를 파쇄기에 투입 후 다른 품목의 폐자재 투입을 위해 에어건(AIR GUN)으로 파쇄기 호퍼 내부를 청소하던 중 칼날에 손이 끼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설비 가동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실시
 - 칼날이 회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마 미끄러질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
- 폐자재 투입작업시 비정상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족할 때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지조치 미실시

>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보수, 정비, 청소작업 시 설비 운전정지
 - 이물질제거 등 작동부 근접작업 시 운전을 정지 시키고 메인스위치에 "작업 중 조작금지" 표지판 부착 후 작업하여야 하며.
 - 다른 근로자가 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작반에 기동 스위치 잠금장치(Key Switch)를 설치하고. 열쇠는 관리감독자가 별도로 관리
- 폐자재 투입구에 덮개 또는 난간·울 등의 추락방지조치 실시
 - 추락의 위험이 있는 투입구에 덮개를 설치하거나. 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에 난간이나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



작동중인 주유소 세차기의 외벽에 끼임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1, 2월 충남 서산시 소재의 oo주유소에서 세차기 가동 중 세차기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세차기 외벽과 세차기 사이에 끼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세차기 작동 중 내부로 들어감

- 외벽이 고정되고 세차기가 전·후진함으로써 끼임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. 잠깐의 시간 사이에 이물질을 주우려다 끼이는 재해 발생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세차기 가동 시 내부 진입 금지

- 세차기 내부 이물질제거. 가동상태 확인 등을 위해 작동부 내부 진입시에는 세차기를 가동중지 후 들어가야 함

○ 세차기 가동 표시장치 설치

- 세차기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(경광등, 경보음)를 설치 권장
-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
 - 재해발생 위험장소(기계의 측면, 앞·뒷면 등)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

옥내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이동 중 넘어짐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테이프 도매업체 3층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계단에 적재해 놓은 제품 박스를 3층 작업현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포장용 박스 한 묶음을 들고 뒷걸음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3층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O 재해발생 장소의 계단 폭은 110cm이고. 박스 폭이 50cm로 실제 근로자가 통행 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약 60cm로 감소하여 근로자는 박스 묶음을 들고 안전하게 운반할 공간이 용이하지 않고.
- O 사용할 박스가 높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 박스를 뒷걸음으로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추정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계단 통로에 제품 등 적재 금지

-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(제품 등) 등을 설치 또는 적재 금지 (화재발생시 긴급 대피하기 위해서도 더욱 적재해서는 아니됨)

○ 계단에서 박스 등 운반시 올바른 보행 실시

- 계단에서 제품 등을 들고 보행시 안전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앞으로 보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·감독 실시



철제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짐

◈ 재해발생 개요

O 경기도 광주시 OO 소재의 도매업체에서 근로자가 크리스탈 제품을 포장 하기 위해 양손에 포장용 박스를 들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사망

🌘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슬리퍼 착용 및 시야 확보 미흡 등 계단 통행방법 불량

- 높이가 2.4m인 계단에서 근로자가 슬리퍼를 착용하고. 양손에는 포장 용 박스를 들고 있어서 난간을 잡지 못하고 계단의 답단을 정확히 볼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옴

○ 계단의 설치상태 불량

- 기인물인 계단은 앵글로 조립하고 답단을 베니어합판으로 설치하여 답단이 미끄럽고 흔들림이 발생하여 통행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잠재함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계단 통행시 안전한 방법 준수

- 양손에 물건을 들지 말고 안전난간을 손으로 잡아야 하며.
- 슬리퍼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지 말고 안전화 등 미 끄럼방지용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며.
- 뛰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함

○ 계단의 강도 확보 등

- 계단은 500kg/m²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하며, 안전율(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)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함
-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(재해발생 당시 법 기준임)
 - . 상부난간대. 중간난간대.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
 - . **상부난간대**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. **중간난간** 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

◈ 개정(2012. 3. 5)된 현재의 기준

- ·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고,
- ·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,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 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,
- ·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,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하고,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
- . **발끝막이판**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로 설치
- . **난간대**는 지름 2.7cm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

○ 안전보건 교육 및 표지게시

- 계단으로 통행시 위험요인, 주의사항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에 관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여야 함
- 넘어짐 경고표지를 게시하여 작업실시



밤 포대 보관용 철재 팔레트 붕괴

◈ 재해발생 개요

○ 2011. 3월. 경북 소재의 □□창고에서 철재 팔레트 2층으로 보관 중이던 밤 포대를 꺼내려던 중 팔레트가 붕괴되며. 근로자 1명은 밤 포대에 깔려 압사 하고. 다른 1명은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충돌하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철재 팔레트의 안전성 미확보

- 철재 팔레트 용접부위가 녹이 슬어있는 등 피로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전 확인 미실시로 보강조치 미실시

○ 작업방법 불량

- 중량물인 밤 포대를 위에서부터 꺼내지 않고 1층 중간부분에서 인력으로 무리하게 끌어냄으로써 팔레트에 뒤틀림 응력을 제공

◈ 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주기적인 점검 및 보강 실시

- 정기적 및 수시로 철재 팔레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용접부위가 심하게 녹슬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보강 실시하여야 함

○ 작업방법 개선

- 인력을 대체할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로 팔레트 상부 2단을 아래로 이동 시킨 후 1단 팔레트에서 밤 포대를 인력으로 꺼내는 안전작업 실시

창고 모서리를 보행 중 운행중인 지게차에 치임

◈ 재해발생 개요

O 경기도 소재의 oo상사 내 옥외 주류박스 적재장에서 당사 소속 근로 자가 적재창고 건물 모서리 옆을 보행하던 중 운행 중인 지게차에 치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◈ 재해발생 원인

○ 화물 과다 적재로 전방시야 확보 미흡

- 지게차에 주류박스를 너무 높게 적재하여(높이2.200mm 너비1.200mm)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운행

○ 지게차와 접촉 위험지역에 근로자 임의 출입

- 지게차를 사용하여 주류박스 등을 운반하는 충돌위험 지역에 근로자를 임의로 출입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함

○ 작업계획 미작성

-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

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지게차에 화물적재 시 조치

- 지게차에 주류박스 등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높이로 적재하여 운행하여야 하며.
- 부득이 높게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

○ 근로자 임의 출입금지 등 접촉방지조치 실시

- 지게차를 사용하여 주류박스 등을 운반하는 작업시에는 운반중인 화물 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 실시



과도한 적재금지



○ 작업계획의 작성 등

-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충돌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
- 당해 지게차 사용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조치하여야 함

철판이 굴착기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가격

◈ 재해발생 개요

O 2011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co사업장 비철동 앞 작업장에서 굴삭기(10ton) 이동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굴착기 가위장비 건설용 거푸집 옆에 세워두었던 철판(710 kg)이 부딪쳐 넘어지면서 옆에서 청소용 빗자루를 묶고 있던 근로자를 압착하여 사망

◈ 재해관련 상황도



◈ 재해발생 원인

-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전담운전자 미지정
 - 굴착기 사용 작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운전 면허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
- 작업수행 시 유도자 미배치
 - 작업수행 시 유도자를 미배치하여 작업 반경내 근로자 등의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음

◆ 동종재해 예방대책 :

-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를 운전자로 지정
 -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를 운전자로 지정
- 작업장의 정리정돈으로 차량 진입로 확보 및 근로자 시야 확보
 - 작업장의 정리정돈으로 작업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장애물 제거
- 작업수행 시 유도자 배치
 -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의 위험작업 및 근로자 접촉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



설비별 재해예방 O.P.L (One Point Lesso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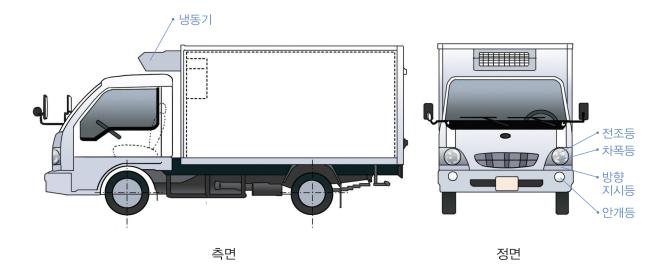
냉동(보냉) 탑차 안전작업



소형화물운수업

냉동(보냉) 탑차란?

- 산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요처, 매장 등으로 운반하기 위한 냉동(보냉) 탑차는 국민 식생활 향상과 함께 차량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.
- 냉동, 냉장식품 수송을 위한 차량에는 크게 냉동차와 보냉차가 있으며, 냉동차는 장시간 차량에 적재된 냉동, 냉장식품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차단할 수 있는 단열벽과 냉동기가 장착되어 있다. 냉동차는 기능적으로 보냉차와 같이 식품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구조이고 단지 냉동기에 의해 일정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

탑차의 종류

- 냉동탑차 : 보냉탑에 차량 냉동기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-18℃이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트럭
- 냉장탑차 : 보냉탑에 차량 냉동기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-5℃이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트럭
- 보냉탑차 : 전체적으로 단열이되어 외부로 침입열이 차단되도록 만든 탑을 설치한 트럭
- 내장탑차 : 일반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탑을 설치한 트럭(온도와 무관)



주요 위험요인

- 》 교통사고 발생위험 있음
 -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있음
- 💟 탑차 내 미끄러짐, 걸림
 - 냉동탑차 내에서 화물 운반 중 바닥의 얼음 또는 화물에 의한 걸림, 미끄러짐 위험
 - 이삿짐 등 운반작업 시 화물트럭에서의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
 - 냉동탑차에 적재된 화물 하역 중 높은 곳의 화물 낙하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
- 💟 화물 적재·하역작업 중 근골격계 질환발생
 - 무리한 동작 및 부적합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

아저대책

• 작업시작 전 점검실시

- 무너질 위험에 대한 화물 적재상태 확인
- 탑차 내의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 제거

• 작업방법의 준수

- 중량물 취급방법에 적합한 하역작업 실시
- 적재하중 준수

• 중량물 취급작업의 안전

- 화물의 중량, 취급빈도, 운반거리,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
- 5kg 이상의 화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
- 취급하기 곤란한 화물은 손잡이, 갈고리 또는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 활용
- 중량 화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근로자의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켜야 함







냉동(보냉) 탑차

재해사례 : 중량물 취급 중 발이 깔림

개요

○○아파트에서 ○○공사 소속 근로자가 이삿짐 하역 작업 도중 5톤 탑차에서 피아노를 바닥에 내리는 도중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피아노에 왼쪽발이 깔리면서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 발생



발생원인

• 피아노 상차 시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과도한 하중이 쏠림

예방대책

• 상·하차 하부작업 시에는 2명이 동시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인체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함



아저수칙

- 적재하중을 준수한다.
- 탑차 내에 미끄러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.
- 화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한다.
- 운행 전 적재함 잠금장치를 확인한다.
- 각종 전기 점등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.
- 각 타이어 측면이 갈라지거나 찢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.
- 클러치나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 및 브레이크액의 수준은 양호한지 확인한다.
- 장시간 운행 시 적정한 휴식을 취한다.

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171조 (전도 등의 방지)
 - 제173조 (화물적재 시의 조치)
 - 제175조 (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)
 - 제177조 (싣거나 내리는 작업)
- 제172조 (접촉의 방지)
- 제174조 (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)
- 제176조 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
- 제178조 (혀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)



옥내 계단

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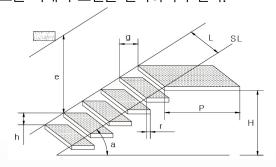
옥내 계단이란?

옥내 계단이란 높이가 다른 두 바닥면을 연결하는 단형의 통로로 건물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.



● 계단의 일반요건 및 구조 ●

계단의 구조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

- H: 계단높이
- a: 발판깊이
- e: 발판위의 머리 공간
- h : 답단 높이
- P : 계단참
- r : 겹침
- a : 경사각
- L : 통로폭
- SL: 경사선
- 발판깊이(g)와 답단 높이(h)는 "600≤g+2h≥660(mm)"의 공식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동일한 계단에서의 답단 높이(h)는 모두 일정해야 한다.
- 발판위 머리 공간높이(e)는 발판 위에서부터 2.3m 이상이어야 한다.
- 통로 폭(L)은 1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계단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은 1.2m 이상이어야 한다.
-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수직계단높이(H)는 3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

주요 위험요인

- ♥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전도
- 💟 계단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시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전도
- ♥️ 계단청소 시 작업자의 작업 자세 및 작업방법이 부적합하여 계단의 헛디딤으로 인한 전도
- 🤍 조명시설 미비로 인한 충돌 및 전도

아저대책

- 안전기준에 적합한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
-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
 -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방지조치(고무패드, 돌기부분 등)
- 계단을 마른상태로 유지
 - 계단에 흘려진 액체의 즉시 제거
 - 계단상에 운반중인 운반물로부터의 흘림방지
- 청소작업 중 작업자 외 출입금지
 - 작업 장소 입구에 "출입금지", "청소작업 중", "미끄럼주의" 등의 안전표지 설치
 - 계단 청소 시에는 하향식 이동방법에 의한 청소방법보다는 상향식 이동청소방법으로 작업
- 계단에서의 헛디딤 사고요인 작업방법 개선
 - 사다리 재질은 알루미늄 등 가볍고, 견고한 금속제 재질일 것
 - 사다리 기둥(세로대) 및 발판(가로대)은 휨, 갈라짐, 쪼개짐 등 변형이 없을 것
 - 각 단은 바닥면과 평행하고, 세로대의 2곳은 지면과 밀착 시 힘이 균등하게 분포 될 것
-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
 - 안전화, 미끄럼방지화, 보호장갑, 작업복 등을 착용 후 작업 실시
- 적절한 조도 유지
 - 통행에 충분한 조도 유지: 75럭스(Lux) 이상
- 계단 청소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
 -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작업하도록 보조도구나 작업 자세를 바꾸어 줌
 - 청소물통 등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 보조도구를 사용함
 - 작업 전 후 스트레칭 실시

재해사례: 계단을 통한 박스 운반 중 추락

개요

작업장 내에서 제품 포장을 위해 2층에서 포장용 박스를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실족하면서 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사망



발생원인

- 계단에서의 통행방법 불량
- 계단의 설치상태 불량

예방대책

• 계단 통행시 안전한 방법 준수

계단통행시 시야를 확보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화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난간을 붙잡고 이동하여야 하며 뛰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통행

• 계단 설치 시 안전사항 준수

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 제곱미터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, 안전율(재료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)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함

• 안전보건교육 실시

계단으로 통행 시 위험요인, 주의사항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



아저수칙

작업 전

-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다.
- 작업모. 미끄럼방지화. 보안경. 보호장갑.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물기를 제거한다.
-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한다.
- 작업 후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.

작업 중

-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.
- 앞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걸어간다.
-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꼭 잡는다.
- 세척제나 광택제를 삼키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 응급조치를 숙지한다.
- 작업 중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.
- 작업 중 짧게 자주 쉰다.
- 젖은 손으로 작업하지 않는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26조 (계단의 강도)
 - 제28조 (계단참의 높이)
 - 제30조 (계단의 난간)

- 제27조 (계단의 폭)
- 제29조 (천장의 높이)
- KOSHA CODE G-10-2008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

배달용 오토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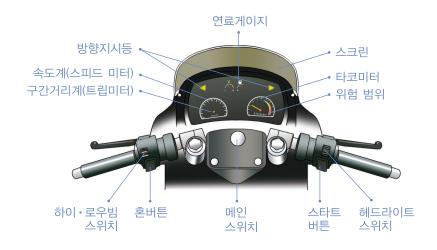


음식 및 숙박업

배달용 오토바이란?

배달용 오토바이는 발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회전시키게 만든, 바퀴가 두 개 달린 원동기 로서 국내법상 분류는 이륜차이다.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쪽에 배달용 함을 장착하여 사용 하고 있다.







- 주요 위험요인

- ◈ 골목길 모퉁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교통사고 발생
- ♥ 기상조건(눈, 비, 바람 등)이 좋지 않아 사고가 일어남
- ♥ 휴대폰 통화 또는 한 손에 배달물을 든 채로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남
- 💟 오토바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

안전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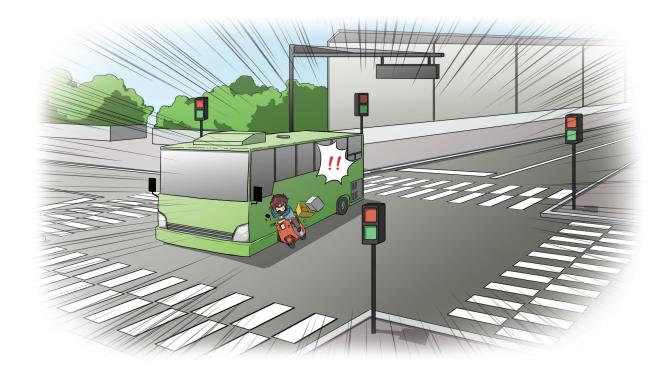
- 반드시 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
- 운행 중 전방상태를 잘 살피며 교통법규 준수
- 과속이나 핸들 과대조작, 급제동 금지
- 평소 오토바이를 철저하게 정비
- 반드시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
- 기상관계나 도로 바닥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운행
- 안전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빠른 배달을 요구하지 말 것
-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
- 배달 업무는 반드시 면허 소지자가 배달함
- 사례사고를 교육하여 같거나 비슷한 사고를 예방



재해사례: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충돌

개요

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마주오는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



발생원인

-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
- 개인보호장구 미착용

예방대책

-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 실시
- 교차로 통행 시 좌우확인 철저
- 반드시 보호 장비 착용 (안전모, 보호대 등)



아저수칙

- 평소 오토바이 정비를 철저히 한다.
- 반드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배달을 한다.
- 운전 중에는 반드시 전조등, 후미등, 방향지시등을 사용한다.
- 운전 중 흡연, 잡담, 휴대폰 통화 등 불필요한 행동을 금지한다.
- 배달경로를 가능한 한 안전한 길로 선정하여 운행한다.
-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다.
- 과속, 난폭운전,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는다.
- 지나치게 어두운 곳이나, 가혹한 도로 조건에서는 운행을 자제한다.
-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이륜차의 안전점검을 받는다.
- 운전 중 반드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다.
- 반드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·착용한다.
- 기상관계나 도로 바닥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운행한다.
- 운행 중 전방상태를 잘 살피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한다.
- 사고사례를 공유하여 동종 및 유사한 사고를 예방한다.
- 교차로 통행 시 좌우확인을 철저히 한다.
- 교통신호가 확실히 바뀐 후에 출발한다.
- 작업 전·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.



관련 법령

- KOSHA GUIDE G-58-20011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- 도로교통법 제43조 (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)





지게차란?

지게차는 화물을 실어 옮기는데 쓰는 특수차량이다. 오늘날 쓰이는 지게차는 1920년대 미국의 여러 회사에서 제조되기 시작했으며, 현재는 화물 운반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장비이다.



◉ 지게차의 종류 ◉

- 엔진 형태별
 - ① 디젤 엔진 ② 가솔린 엔진 ③ LPG 엔진 ④ 전동 엔진(축전지식)
- 구동륜 형태별
 - ① 단륜식: 적재능력 약 4톤 이하 ② 복륜식: 적재능력 최대 20톤 이상
- 타이어 형태별
 - ① 공기주입식: 튜브가 있어서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접지압이 좋은 특징이 있다.
 - ② 솔리드식: 튜브가 없는 형태로 통타이어라고도 하며 가격이 비싸고 마모가 적다.



- 주요 위험요인

- 💿 급선회, 급제동 등으로 인한 지게차 전복
- 시야 미확보로 인한 충돌
-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수행으로 인한 추락
- 💟 운반 중이던 화물이 떨어짐

아저대책

- 지게차 전용통로 확보 및 통로구간 운행준수
- 구내 제한속도 표지판 부착 및 규정 속도(10km/h 이하) 준수
- 작업 전 전조등, 후미등, 경보기 등 안전장치 및 제동장치, 차륜상태 등 점검
- 지게차 전담 운전자 외 탑승 및 운전금지
- 안전벨트 착용
- 핸들 급조작에 따른 급선회 금지
- 화물 과다적재 및 한쪽으로 치우친 적재금지
-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매달은 상태에서 주행(급선회) 금지

화물의 하역순서

-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속도를 감속한다.
-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.
-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팔레트. 스키드의 위치까지 상승시킨다.
- 포크 꽂는 위치를 확인한 후 정면으로 향하여 천천히 꽂는다.
- 꽂아 넣은 후 5~10cm 들어올리고. 팔레트와 스키드를 10~20cm 정도 앞으로 당겨서 일단 내린다.
- 다시 한번 포크를 끝까지 깊숙이 꽂아 넣고, 화물이 포크의 수직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하면 상승시킨다.
- 화물을 상승시킨 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내린다.
- 지상으로부터 5~10cm의 높이까지 내리고.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에서 약 15~20cm의 위치에 놓고 목적하는 장소로 운반한다.

재해사례: 지게차 위에서 유리창 청소작업 중 추락

개요

하역장 내에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올라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2명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



발생원인

• 지게차 목적 외 사용

지게차는 화물의 적재. 하역 등 주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실시

• 승차석 외 탑승

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탑승하여 작업수행

예방대책

• 지게차 목적 외 사용 및 승차석 외 탑승금지

지게차는 화물의 적재. 하역 등 주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

• 작업방법 변경

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등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



아저수칙

-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운전한다.
-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게차를 점검 후 사용한다.
- 모퉁이나 출입구 그리고 사람들 근처에서는 지게차의 속도를 줄이고 경고음을 사용한다.
- 백레스트나 헤드가드를 장착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작동하지 않는다.
- 지게차에 운전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.
- 손과 발이 제어장치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젖은 손이나 신발을 착용했을 시에는 지게차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.
- 포크에 화물이 실려 있거나 들어 올리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서있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.
- 사람이나 건물에 접촉 또는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선회한다.
- 화물을 적재하고 경사로를 오를 경우에는 전진으로 운행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운행하다.
- 경사로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방향전환 등을 하지 않는다.
- 불안전한 상태로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들어 올리지 말고 화물을 정확하고 균형에 맞춰 적재한 후 운반한다.
- 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는다.
- 화물을 올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작동시키지 않는다.
- 정해진 장소에만 지게차를 주차하고 포크는 완전히 바닥에 위치해두며 열쇠는 운전자가 별도로 관리한다.
- 지게차 운전자는 구내속도를 준수한다.
- 비포장 도로, 좁은 통로, 언덕길 등에서는 급출발이나, 급브레이크 조작, 급선회 등을 하지 않는다.



관련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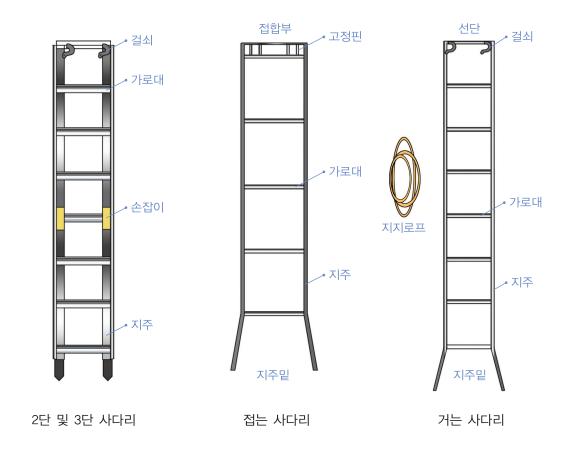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179조 (전조등 및 후미등)
 - 제181조 (백레스트)
 - 제183조 (좌석의 안전띠의 착용 등)
- 제180조 (헤드가드)
- 제182조 (파레트 등)





사다리란?

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이다.



● 사용방법 ●

- 사다리 작업 시 OVER-REACHING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2인 1조 작업 실시
-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교육 실시
- 아웃 트리거 등의 안전조치가 확보된 사다리로 교체
- 사다리 작업 시 3점 지지 원칙 준수



- 주요 위험요인

- ◈ 사다리 중심에서 사다리 폭 밖으로 몸을 과도하게 내미는 자세로 작업 (OVER-REACHING)
- 💟 사다리 이용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
- ♥️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시 단독으로 수행
- ♥ 사다리 상부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작업

안전대책

-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작업대 사용 - 사다리 작업 시에는 2인 1조 공동 작업 실시
-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
- 사다리 상·하부 전도방지조치 실시
- 사다리 설치 시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
- 사다리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물결모양의 표면처리 실시
- 파손 없는 견고한 금속제 사다리 사용(사전 육안점검 실시)
- 사다리 설치각도는 75° 이내로 유지
- 사람이나 설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사다리 설치 금지 -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및 유도자 배치
-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 승강 금지
- 사다리의 수직 기둥은 최상부 지점 또는 발판으로부터 60cm 이상 연장 설치
- 하자가 있는 사다리를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음



안전성이 확보된 사다리



기존 사다리에 버팀대 설치

재해사례: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중 추락

개요

마트 매장에서 사다리로 상품을 진열하고 내려오던 중, 사다리 중간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박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급히 피하려다 추락하는 사고 발생



발생원인

- 사다리에 물건적재
- 사다리 작업 시 2인 작업 미시행

예방대책

- 사다리 작업 시 장애물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
- 2인 1조로 사다리 작업 진행
- 사고사례 교육 실시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사다리 상·하부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한다.
- 사다리 설치 시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.
- A형 사다리 변경사용 시 고정쇠, 멈춤쇠 이탈 및 파손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.
- 사람이나 설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는다.
- 사다리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.

작업 중

-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.
-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.
- 2인 1조 공동작업을 수행한다.

작업 후

- 급하게 오르내리거나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.
- 하강 시 지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내려온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(사다리식 통로의 구조)
- KOSHA CODE C-35-2008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- KOSHA GUIDE G-3-200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안전가이드
- KOSHA GUIDE G-15-2009 이동식 목재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
- KOSHA GUIDE G-18-2009 이동식 금속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





트럭이란?

-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칭한다.
- 현재 대부분의 트럭은 디젤 기관으로 운행하고 있다.
- 소형을 제외하면 모든 트럭은 운전석과 차체는 분리되어 있다.



● 사용방법 ●

-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운전할 것
- 물건 승하차 시 적재중량만 적재하며, 물건을 로프로 고정해서 낙하를 방지할 것
- 작업 시 항상 2인 이상이 작업하며, 작업 전에는 트럭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



주요 위험요인

- ♥ 적재방법의 불량으로 화물 낙하
- ♥ 적재함에서 작업 중 추락
- 🕥 화물 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로프가 파단
- ▼ 화물 상·하차 시 불시 출발로 작업자 추락
- 💟 과속,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

안전대책

- 화물차 적재함 등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부착
- 이동 시 작업자 적재함에 탑승 금지
- 작업장 내 제한속도(10km/h 이하) 준수
- 주·정차 시 주차브레이크 사용. 경사로 고임목 사용
- 후진 시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 배치
- 작업장 내 차로와 작업자 통행로 구분에 따른 운행준수
-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사용금지
- 화물 유동에 의한 낙하방지를 위해 로프 결속 철저 및 로프 파손 여부 점검
- 화물 과다 적재 금지
- 화물 상하차 작업 시 불시 출발금지
- 주행 시 교통신호, 표지판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
- 안전벨트 착용 및 앞지르기·끼어들기·과속 금지
- 야간, 빗길, 안개길 등에서 운전 시 감속 주행







1톤 트럭

2.5톤 트럭

4.5톤 트럭

재해사례: 트럭 적재함에 물품 상차 시 넘어짐

개요

냉동육 박스(20kg)를 트럭에 상차하는 도중 적재함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짐



발생원인

- 작업장 미끄럼방지조치 미흡
-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재해 발생

예방대책

- 중량물 작업 시 컨베이어나 이동대차를 활용할 것
- 작업장 바닥 및 적재함 바닥에 물기 등을 제거
- 물건 상하차 시 장애물을 사전에 없애며,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것



아저수칙

일반

- 적재량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.
-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준수한다.
- 차량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다.

주차

- 차량의 시동을 끄고 보조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제동한다.
- 경사지에 주차 시에는 구름 방지 조치를 한다.

작업 중

-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지정한다.
- 포크. 버킷. 암 등이나 이들에 의해 지지되는 화물 아래는 출입하지 않는다.
- 화물 적재 시에 편하중을 방지하고 낙하 방지조치를 실시한다.
- 승차석이 아닌 적재함 등에 근로자 탑승 시에는 추락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.
-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, 안전모를 착용한다.
- 짐걸이 용 섬유로프는 사전에 점검한다.
- 로프 풀기 작업, 방수포를 씌우거나 걷는 작업 시에 화물의 낙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추락 하지 않도록 단부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업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171조 (전도 등의 방지)
 - 제173조 (화물적재 시의 조치)
 - 제178조 (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)
 - 제188조 (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) 제189조 (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)
 - 제190조 (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)

- 제172조 (접촉의 방지)
- 제176조 (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)
- 제187조 (승강설비)

참고

고용노동부 연락처

연번	기 관 명	주 소	전화번호
1	서울지방고용노동청	중구 삼일대로 363(장교동)장교빌딩 1 [~] 6층, 9층	02)2250-5770
2	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	강남구 도곡로 408(대치동1024) 디마크빌딩 7~9층	02)3465-8498
3	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	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0 [~] 11층	02)2142-8871
4	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	마포구 마포대로 63-8 삼창프라자빌딩 3~5층	02)2077-6176
5	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	영등포구 선유로 120	02)2639-2278
6	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	강북구 한천로 949 (번동 432-5)	02) 950-9811
7	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	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(구로3동 222-30)	02)3281-5021
8	중부지방고용노동청	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39(구월3동 1113)	032) 460-4400
9	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	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(계산동 1077-1)	032) 540-7983
10	부 천 고 용 노 동 지 청	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(중4동 1032-2)	032) 714-8781
11	의정부고용노동지청	의정부시 충의로 143	031) 850-7638
12	고양고용노동지청	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사옥 5,6층	031)931-2870
13	경 기 고 용 노 동 지 청	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(천천동 575-5)	031) 259-0252
14	성 남 고 용 노 동 지 청	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15 (야탑동 135-1)	031) 788-1571
15	안 양 고 용 노 동 지 청	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	031) 463-7350
16	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	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(고잔동 526-1)	031) 412-1974
17	평 택 고 용 노 동 지 청	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 3~5층	031) 646-1184
18	강 원 고 용 노 동 지 청	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(춘천지방합동청사 2층)	033) 258-3581
19	강 릉 고 용 노 동 지 청	강릉시 경강로 1991 (남문동 175-3)	033) 650-2525
20	원 주 고 용 노 동 지 청	원주시 만대로 59 (무실동 1716-3번지)	033) 769-0821
21	태 백 고 용 노 동 지 청	태백시 황지동 번영로길 341	033) 552–8603
22	영월고용노동출장소	강원도 영월군·읍 단종로 8	033) 371–6240
23	부산지방고용노동청	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6(연산2동 1470-1)	051) 850-6470
24	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	부산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(금사동 107-1)	051) 559-6649
25	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	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(덕포2동 761-2)	051)309-1556
26	창 원 고 용 노 동 지 청	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(용호동 7-5)	055) 239–6580
27	울산고용노동지청	울산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(옥동)	052) 228–1889
28	양 산 고 용 노 동 지 청	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(석산리 1440-2)	055) 387-0805
29	진주고용노동지청	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	055) 752-1752
30	통영고용노동지청	통영시 해미당로 107(무전동 356-130)	055) 650-1949
31	대구지방고용노동청	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(범어동 743)	053) 667–6360
32	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	대구시 북구 구암로 51	053) 605-9157
33	포항고용노동지청	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(대잠동 940)	054) 271-6830
34	구 미 고 용 노 동 지 청 영 주 고 용 노 동 지 청	구미시 3공단 1로 312-27(임수동 92-31) 영주시 원당로 68	054) 450-3550 054) 639-1155
35			
36	안 동 고 용 노 동 지 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	안동시 경동로 400 (태화동 715-3)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 [~] 6층	054) 851-8030 062) 975-6330
38	전 주 고 용 노 동 지 청 익 산 고 용 노 동 지 청	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(인후동1가 807-8) 익산시 하나로 478 (어양동 626-1)	063) 240-3399
40	군 산 고 용 노 동 지 청	국전자 아다도 476 (이성등 626-1) 군산시 조촌5길 44 (조촌동 852-1)	063) 450-0530
41	목포고용노동지청	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(상동 976)	061) 280-0100
42	여수고용노동지청	여수시 문수로125 (문수동 111-1)	061) 6500-136
43	대전지방고용노동청	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(둔산동 1303)	042) 480-6301
44	청주고용노동지청	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	043) 299-1311
45	천 안 고 용 노 동 지 청	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 3	041) 560-2865
46	충주고용노동지청	충주시 중원대로 3434 (봉방동 21-38)	043) 840-4036
47	보령고용노동지청	보령시 옥마로 42 (명천동 58-6)	041) 936-4545
+1	T 0 T 0 N 0	TON JUL 12 (05.0 00 0)	0417 000 4040

참고

안전보건공단 연락처

연번	기 관 명	주 소	전화번호
1	서비스재해예방실	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032-510-0675
2	서울지역본부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79(대방동 49-6, 유한양행빌딩 14, 15층)	02-828-1638
3	서울북부지도원	서울시 중구 칠패길 5(봉래동 1가 10, 우리빌딩 7, 8층)	02-3783-8315
4	강원지도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(온의동 513, 대한교원공제회관 2층)	033-815-1011
5	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 64-31)	051-520-0524
6	경남동부지도원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(석산리 1440-1) 양산노동종합청사4층	055-371-7533
7	울산지도원	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6(달동 615-8) 국민은행빌딩2,4층	052-226-0523
8	경남지도원	경남 창원시 중앙로 159(용호동 7-3)	055-269-0562
9	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,20층	053-609-0520
10	경북동부지도원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(대도동 124-4)	054-271-2043
11	경북북부지도원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054-478-8012
12	경인지역본부	인천광역시 서구 한빛로 15(가정동 491)	032-5707-255
13	부천지도원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(상3동 538-83) 대신프라자 3층	032-680-6570
14	경기남부지도원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(이의동 906-5)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13층	031-259-7128
15	경기동부지도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(금곡동 106-2) 소곡회관 4층	031-785-3313
16	경기북부지도원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(신곡동 801-1)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031-828-1916
17	경기서부지도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번지 센트럴시티 웨딩홀 2층 위치	031-481-7539
18	광주지역본부	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(우산동 1589-1) 무역회관빌딩 8,9,11층	062-949-8772
19	전북지도원	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(인후동 1가 807-8) 노동부종합청사 4층	063-240-8531
20	전남동부지도원	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061-689-4952
21	제주지도원	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95(이도2동 390)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	064-797-7505
22	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	042-620-5612
23	충북지도원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(가경동) KT빌딩 3층	043-230-7123
24	충남지도원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(불당동 492-3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041-570-3420

산업사고 속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

"위기탈출 사고포착" 애플리케이션

- ✓ "지피지기면 백전백승" 안전의 시작은 바로 위험을 보는 것!
- ✓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사고, 자연재해 및 사업장 사고 현장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알려드립니다.



어플리케이션 다운 받는법

- 앱스토어(아이폰) 또는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에 접속하여 '사고포착' 또는 '안전보건공단'으로 검색
- '위기탈출 사고포착'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
- 다운로드 완료 후 바로 열기를 누르거나 바탕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

도·소매업 사고사망사례집

발행일 : 2012. 9월 초판발행

발행인 : 백 헌 기

발행처 :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

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

T. 032) 5100-675

F. 032) 502-0031

